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 유가족의 보호 및 지원 강화〉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4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5.
3. 회부연월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 31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족(이하 “미성년 유가족”이라 함)에 대한 긴급 보호·지원 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기관의 조치 사항 및 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4(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 ①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족(이하 “미성년 유가족”이라 한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보호 및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미성년 유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현행	개정안
	있다. ④ 미성년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유가족은 성년인 유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¹⁾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²⁾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보호 및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은 미성년 유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의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의 중복 입법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³⁾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시킬 의무⁴⁾를 부여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으로 보호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향후의 아동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과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음⁵⁾.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여 중복 입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5)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⁶⁾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은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⁷⁾하여 18세인 미성년 유가족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18세인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 필요성 유무 및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입법 방식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

6)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